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722
----------	-----

제 출 일 : 2025. 5. 3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공유재산 현황

재산종류	건물명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면적
	소재지			
행정재산	(구)금곡주민자치센터	남양주 문화재단	문화재단 사무실	375㎡ (4층)
	석실로 724 (금곡동)			

○ (면제) 사용료 산출

- 재산평가액(608,582,960원) × 사용료 효율(5%) = 30,429,140원 / 연간

4.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 2. 25. : 2025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구)금곡주민자치센터 내 사무실 사용 → 원안가결
- 2025. 5. :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출
- 2025. 6. : 남양주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 문화예술과장)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